

## 지역소득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오삼규, 정창호, 김경용<sup>1)</sup>

### 요 약

지역소득통계는 경제·사회·복지의 종합적인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소득통계의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지역소득통계 뿐만 아니라 분배측면의 소득에 대한 통계도 함께 조속히 작성되어야 한다. 국민소득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16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통계청에서 별도 추계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에 지역내총생산(GRDP)과 국내총생산(GDP)의 상호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시도에서 작성하고 있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작성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 GRDP의 작성 확산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이를 자료와 통계청에서 작성한 시도별 GRDP자료와의 정합성 유지방안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주요용어 : GRDP, 지역소득통계, 지역소득통합계정

### 1. 머리말

지역소득통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국 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등에서 지역별로 파악하는 가구소득 등과는 구별되어 사용된다. 지역소득통계는 국민계정체계(SNA)의 개념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지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분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를 말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생산측면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생산하였는가를 추계한 것이고,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해당 시도에서 소비 및 투자에 얼마나 지출하였는가를 추계한 것이다. 반면 국민소득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소득의 생산·분배·처분을 나타낸다.

지역소득통계는 지역경제 상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로서 각종 지역관련 정책 수립 및 지역경제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소득통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지역소득통계와 더불어 분배측면의 지역소득통계도 조속히 개발하여 종합적인 시도별 지역소득계정을 작성하고, 기초자치단체의 GRDP 추계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화, 세분화되는 지역소득통계 수요에 부응코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소득통계의 작성현황을 정리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작성상의 애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살펴보 고자 한다.

### 2. 지역소득통계 작성연혁

1) 통계청 통계분석과장 (email: skoh@nso.go.kr)  
통계청 통계분석과 생산계정 담당서기관 (email: changho@nso.go.kr)  
통계청 통계분석과 지출·분배계정 담당사무관 (email: gykim@nso.go.kr)

## 2.1 지역내총생산(GRDP)

우리나라의 지역소득통계는 1960년대 중반에 들어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서는 서울시를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이란 이름으로 지역내총생산을 추계하여 1978년까지 공표하였으나 추계의 정확도 문제로 인해 공표를 중단하고 1979년부터는 내부 자료로 이용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내무부와는 별도로 KDI,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시 생산 및 시민분배소득」을 추계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소득통계는 추계결과의 정도문제로 이용도가 낮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정도 높은 지역소득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소득통계의 개발에着手하여 수많은 기초통계의 정비, 개선 및 개발과 지역소득의 추계시산 작업을 거친 끝에 1993년 5월 「지역내 총생산(1985-1991)」을 공표하였다.

## 2.2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지역내 총생산의 추계로 지역별 생산소득자료의 파악은 가능하게 되었으나 지역의 소비와 투자 구조, 지역내외로의 물류흐름 등 지출측면의 구조 파악이 어려워 이를 부문에 대한 통계작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통계수요에 부응코자 통계청에서는 1997년부터 「지역소득 지출계정」작성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1년 7월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공표함으로써 지역소득계정에 대한 이용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 2.3 분배 측면의 지역소득 (지역별·제도부문별 요소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지역별·제도부문별 요소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등 분배측면에 대한 통계수요에 부응코자 통계청에서는 2002년부터 「지역소득 분배계정」작성을 추진하여 2007년 동 계정의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계기법에 대한 연구와 시산작업을 진행 중이다.

# 3. 지역소득통계 추계 현황

우리나라의 지역소득통계는 기초통계 사정상 산업별 부가가치를 먼저 추계하여 생산 측면의 지역내총생산 규모를 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규모를 추계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배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3.1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지역내총생산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총 산출액에서 중간소비액을 공제하여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1) 총산출

총산출이란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산출물인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와 산출물의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에 대한 정의도 다르다.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경우는 생산량과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총산출을 계상하고 있으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인 거래마진의 합계를 총산출로 계상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출로 계상하는데, 숙박업은 숙박료수입이, 학원은 수강료수입이, 여객운수업은 운임수입이 각각의 총산출이 된다.

금융업의 경우는 송금·추심·환전 등에 따른 실제서비스 판매수입과 수취재산소득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해서 구해지는 금융중개서비스료를 총산출로 보며, 보험업의 경우엔 수취한 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에서 지급보험금과 필요준비금 추가 적립액을 차감한 보험서비스료를 총산출로 본다.

정부 및 비영리서비스 생산자의 경우에는 서비스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가 곤란하여

서비스생산에 투입된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한 총투입 비용을 총산출로 본다.

### (2) 중간소비

중간소비란 생산과정에서 투입물로서 소비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액을 말한다. 중간소비에는 생산에 직접 투입된 재료비뿐만 아니라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포함한다.

한편 중간소비와 최종소비지출의 구분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투입되는가 혹은 최종소비지출 주체에 의해 소비되는가에 따라 구별된다.

중간소비와 자본형성의 구분은 투입된 재화와 서비스가 회계기간 중에 소진되는가 혹은 회계기간 이후에도 남아 이익을 발생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수선비의 경우 고정자산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시키는데 소요된 것이라면 중간소비에 계상되나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성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자본 형성으로 분류된다.

### (3)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생산 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총산출에서 중간소비를 뺀 것이다. 부가가치는 고정자본소모,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물세와 생산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고정자본소모는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각 제도부문의 소득으로 분배된다.

$$\textcircled{1} \text{ 명목 부가가치} = \text{명목 산출액} - \text{명목 중간소비}$$

$$\textcircled{2} \text{ 실질 부가가치} = (\text{명목 산출액}/\text{해당 디플레이터}) - (\text{명목 중간소비}/\text{해당 디플레이터})$$

## 3.2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추계

### (1) 최종소비지출

최종소비지출은 소비주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표로서 경제주체에 따라 가계 최종소비지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 정부 최종소비지출로 나누어 진다.

가계 최종소비지출이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상적 최종지출액을 의미한다. 가계의 포괄범위는 주택소유라는 산업의 주체로서의 가계가 아닌 소비주체로서의 가계만을 포함한다. 거주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거주자가계의 최종소비지출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이란 다른 방법으로는 편리하게 제공될 수 없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계에 제공(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대부분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총산출액에서 가계에 대한 상품·비상품(수수료, 입장료 등) 판매액을 공제하여 동 부문의 최종소비지출액을 추계한다.

정부서비스생산자는 일반산업과는 달리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등으로 얻어진 자금에 의해서 행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부문의 산출은 정부자신이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산출액에서 상품·비상품(예: 박물관,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 관공서의 출판물판매,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국·공립학교 납입금 등) 판매액을 공제하여 동 부문의 최종소비지출액을 추계한다.

### (2) 총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은 생산자(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 서비스생산자)가 생산목적을 위하여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한 순취득액(취득액 - 처분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형고정자산(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비 등)뿐만 아니라 무형고정자산(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 등)도 포함된다.

총고정자본형성의 기록은 고정자산의 소유권이 최종 사용자에게 이전되었을 때로 하며 이전되기 전에는 재고로 기록한다. 단, 건물 또는 기타 구축물 등을 사전 매매 계약에 의해 건설하

## 지역소득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거나 자가계정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회계기간 중 건설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 (3)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이출-이입)은 재화의 순이출과 서비스의 순이출로 구분된다. 재화의 순이출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광공산품이 국내 타지역으로 순이출되거나 해외로 순수출되는 금액을 추계하며, 서비스 순이출은 일반행정 및 국방 서비스, 전기가스수도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국내 타지역 순이출과 해외 순수출을 추계한다.

## 4. 지역소득통계 작성상의 애로점

### 가. 지역단위 기초자료의 부족

지역내총생산은 UN의 국민계정체계(SNA)에 맞추어 현재 각 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생산활동의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를 추계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생산구조에 역점을 두어 실제의 작업을 수행하는 공장이나 사업체를 추계단위로 하여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민간비영리서비스생산자로 나누어 추계한다.

16개 시도별 GRDP를 추계하기 위하여는 산업관련 통계조사, 물가지수, 생산지수, 산업연관표, 국세청외형거래액 및 각종 결산서 등 약 1,370종의 방대한 기초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자료가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부가조사나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업종별 GRDP 추계 이용자료 현황 >

부 문	계	조사통계	통계청	결산자료	기공통계	통계청	행정자료
합 계	1,370	68	27	1,233	21	3	48
공동이용자료	6	5	2		1		
농림어업	35	5	3	4	2	1	24
광업 및 제조업	4	3	3				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90	28		59	2		1
건설업	14	11	7		1		2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8	4	4	1			3
운수업 및 통신업	12	6	2	2			4
금융 및 보험업	975	1	1	964	1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3	3	3	19	1		
공공행정 및 기타서비스	191	2	2	184	3	1	2
순생산물세	12				1	1	11

그러나 농림어업 및 건설업종 등의 경우는 지역별 피용자보수율, 감가상각률 등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당산업의 전국 I/O율을 사용하므로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나. 전문 인력의 부족

현재 16개 시도의 소득추계를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생산계정업무 담당 6명, 지출계정업무 담당 4명, 분배계정업무 개발담당 2명 등 12명이 지역소득추계, 부가조사, 연구개발, 기준년 개편, 보고서발간, 시군구GRDP 추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배소득까지 추계하여 종합적인 지역소득계정을 만들고, 지역소득추계에 필수적인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순환보직에 따라 지역소득계정 담당자 중 경력 3년이상 직원수 비율이 약 40%에 불과하여 전

문성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다. GDP 통계와의 편차

우리나라의 경우 GDP작성기관과 GRDP작성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두 통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추계방법 및 이용자료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1% 내외의 차가 있지만 세부업종별로 들어가면 큰 편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는 시군구 단위에서 전산업을 대상으로 추계한 다음 시도단위의 GRDP와 전국의 GDP가 추계된다면 편차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현재 GDP의 경우 분기단위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매 분기별로 추계하여 연간통계를 추계하고 있는 반면 GRDP는 주로 지역별 연간 실적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자료가 일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통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두 통계자료의 수치가 같아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GDP보다 늦게 공표하는 지역소득통계의 추계담당자는 GDP 통계와의 편차 문제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

### 5. 지역소득통계의 개선방안

#### 가. 지역소득 분배계정의 조기 개발

지역소득을 생산-분배-지출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소득통합계정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현재 지역별 부가가치 및 소비·투자구조 파악을 위해 작성중인 지역내총생산과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계정외에 제도부문별 요소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파악이 가능한 지역소득분배계정이 조기에 개발 완료되어야 한다. 통계청에서는 16개 시·도별 제도부문별<sup>2)</sup> 요소소득(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 분배액 추계와 이전소득(소득세, 사회부담금, 사회수혜금 등) 파악에 중점을 두고 지역소득분배계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1) 제 1차(본원) 소득분배계정 작성

제 1차 소득분배계정에서는 부가가치가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와 정부(조세)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본원소득의 수혜자인 거주자 제도부문에 대해 편제한 것이다. 제도부분별로 본원소득원천(우변)측면에 피용자보수, 생산 및 수입세, 영업잉여, 수취재산소득, 본원소득 사용(좌변)측면에 지급재산소득이 각각 기록된다. 각 제도부문이 수취한 본원소득 총액에서 지급한 본원소득 총액을 차감한 본원소득 잔액이 균형항목으로 계상된다.

##### (2) 제 2차 소득분배계정 작성

제2차 소득분배계정은 1차(본원) 소득분배계정의 균형항목인 본원소득잔액에 수취경상이전총액을 더하고 지급경상이전총액을 공제함으로써 각 제도부문별 처분가능소득이 산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경상이전은 한 제도단위가 다른 제도단위에게 재화, 서비스 또는 자산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거래로 정의되며 소득 및 부에 대한 경상세, 사회보장부담금 및 수혜금, 비생명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등이 이전거래로 처리된다.

#### 나. 추계 기초자료의 개발 및 정비

앞에서 보았지만 GRDP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규모 통계조사 결과에서부터 사업체 결산서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별로 어느 정도의 외형규모 추계가 가능한 자료이지만 지역별 부가가치 항목을 추계하기에는 제한된 업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업종은 주로 전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업세분류별로 투입구조를 상세히 파악할

2) 제도부문 :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정부, 개인(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 지역소득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수 있는 16개 시도별 지역별 산업연관표<sup>3)</sup> 작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GRDP 추계는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추계하는 부문도 있지만, 주로 Top-Down 방식으로 배분 추계하는 부문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 배분자료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같은 사업체 모집단 자료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인력 운영 개선

현재 16개 시도의 GRDP 및 지출추계, 조사, 연구개발, 기준년개편, 보고서 발간, 시군구 GRDP 추계지원, 분배계정 개발업무 등을 생산계정팀과 지출계정팀 12명이 수행하고 있으나, 분배측면의 지역소득통계를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배계정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인력운영은 크게 생산계정, 지출계정, 분배계정 중심으로 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팀에서 동일 자료를 이용하는 정부, 금융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분배계정팀에서 담당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역소득통계는 업무 습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업무의 하나로서, 향후 전문 보직제 등의 도입을 통한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도별 산업연관표 개발, 시군구별 GRDP작성 지원 등을 위한 인력도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

### 라. GDP 통계와의 정합성 유지

GDP와 GRDP 추계는 국제기준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는 통계자료로서 두 통계는 편차가 적어야 한다. 추계에 이용하는 자료가 서로 다르더라도 추계결과는 서로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자료 간의 정확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양 통계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DP와 GRDP 추계기관 간에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정보교환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추계방법에 대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통계자료에 대한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서 관련 통계의 개선도 가져오게 되고 아울러 추계의 정도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다.

### 마. GRDP 공표시기 단축

GRDP는 통계조사결과 등의 기초통계 및 제 결산자료들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통계로 기초통계 자료가 다 작성된 이후에 추계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결과자료 공표는 보통 익익년 6월경에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료의 시의성이 너무 떨어지는 이유로 지난 2000년 12월부터는 공표시기를 6개월 단축하여 매년 잠정결과를 공표하여 왔지만, 익년 3월에 발표되는 잠정 GDP 공표시기에 비해 자료의 시의성과 이용도가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공표시기 단축방안을 검토하여 조기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

### 바. 기초자치단체 GRDP 추계 확대

3) 지역별 산업연관표로는 과거에 5년 주기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권역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으며, 최근에는 한국은행에서도 지방균형발전 일환으로 권역별 산업연관표를 개발 중에 있다.

시도에서 직접 해당 시군구별 GRDP를 추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말 현재 시군구별 GRDP 작성 시도가 6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통계이용자의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다수의 시군구별 GRDP 미작성 시도가 지역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지원을 요청한 시도를 소집하여 교육하거나 현지출장을 통하여 시군구별 GRDP를 독립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추계방법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시·도는 직접 또는 배분추계를 위한 산업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추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빠른 기간 내에 16개 시도 전체가 시군구 단위의 GRDP를 생산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향후 모든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의 GRDP를 작성하게 되면 이를 시군구자료를 취합함으로써 지금 보다도 양질의 시도별 GRDP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통계청은 시도별 GRDP 작성률 않는 대신 표준화된 GRDP 추계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6. 맷음말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소득통계의 작성률 통하여 관련 지역통계의 개선·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소득통계의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지역소득통계의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생산 및 자출측면의 지역소득통계 뿐만 아니라 분배측면의 소득에 대한 통계도 함께 조속히 작성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소득통계 작성률을 위하여는 지역통계자료의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분배측면 지역소득통계의 조속한 개발과 시도별 산업연관표 개발, 시군구별 GRDP 작성 지원 등을 위한 인력도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전문 보직제 등의 도입을 통한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GRDP와 GDP의 상호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익년 3월에 발표되는 잠정GDP 공표시기를 고려하여 GRDP도 현재 연말 공표보다 몇 개월 앞서 공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 지역소득통계의 작성 확산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GRDP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U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 일본 내각부, 「현민경제계산표준방식」, 2002.
- 통계청, 「통계행정편람」, 2004.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추계편람」, 2004.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추계편람」, 2005.
- 한국은행, 「국민계정해설」, 2000.
- 한국은행, 「1993 SNA 용어해설」, 1999.